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5년 5월 30일
- 나. 발 의 자: 차인영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차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예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평가 요청 및 주민 공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공동 조사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 12조~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2014년 석촌동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등 지반침하(싱크홀)가 잇달아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정(2016. 1. 7. 시행 2018. 1. 1.)되었음.

- 법이 시행된지 7년이 경과하였으나, 최근에도 서울 강동구 명일동,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등에서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한편, 영등포구는 ▲신안산선 정차역 ▲여의도의 잦은 지반침하 발생 ▲높은 비율의 노후화된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 여지가 높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영등포구의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하안전평가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전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정의와 같으며, 제6호 및 제7호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랐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제8호는 따로 정의하여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책무)는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책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적절히 규정함.

- 안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은 법 제8조에서 구청장에게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규정한 사항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

항 등을 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하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함.

- 안 제5조(지하안전평가 결과 요청 및 구민 공개)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지하안전평가의 결과의 요청 및 해당 평가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필요시 해당 평가 결과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한편, ‘지하안전평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에 따라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등이 적용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설치 근거는 법 제12조에 따르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함.
- 안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는 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소유자·점유자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3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및 안 제14조(지하개발 중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는 법 제3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가 있음에 따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사중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 명령' 선행 조치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15조(공동조사 대행 등)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지표하부에 공동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바,

- 시설물관리자 각 기관별로 시행했던 공동조사를 영등포구가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중복조사로 인한 비용 낭비를 줄이며, 조사결과와 신뢰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상기 제정 배경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영등포구는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등 현장조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구민 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전임.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8
----------	-----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차인영·이상수·우경란

정선희 의원 (4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예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평가 요청 및 주민 공개 사항(안 제5조)
- 마. 위원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바. 공동 조사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 12조~15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7.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굴착영향범위”란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반 또는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평가 결과 요청 및 구민 공개) 구청장은 지하개발사업에 대해 지하안전평가의 결과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

안전관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 구청장은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지하개발사업자의 지하개발 현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지하개발 중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① 구청장은 지하개발사업자의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침하, 기울어짐, 균열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형이 확인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지하개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현장 조사 의뢰, 응급조치 또는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조사 대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 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